

검 토 보 고

1997. 6. 17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송옥순 의원 발의 (찬성의원 38인)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○ 제 안 : 1997년 5월 29일 발의

○ 회 부 : 1997년 5월 30일

3. 제안이유

○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

충청북도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

○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
위함

4. 주요골자

○ 기금의 조성 (안 제3조)

- 충청북도의 출연금

- 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, 물품, 기타재산

-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

○ 운용기금의 사용 (안 제13조)

-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- 여성의 건전한 시민운동
- 여성의 복지증진사업
- 여성의 사회교육사업
-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
-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○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 (안 제5조)

-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 :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위 원 : 여성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여성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자
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 관련자 중에서
도지사가 위촉하는 자
- 간 사 : 충청북도 여성복지과장

○ 기금의 지원 및 충청북도의 출연금 예산계상 (안 부칙)

- 기금지원 : 안 제13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은 1999년부터 시행
-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: 안 제3조 제2항에 의한 충청북도의 출연금은
1998년부터 예산계상할 수 있음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한 바, 본 조례안은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
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
- 여성발전기금의 조성, 관리,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발의 의원인 송옥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
안 제3조 제1항 제2호 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, 물품, 기타 재산
조항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